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75,5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53,734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66,986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40,753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20,320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76,310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24,901	
	구로구	구로동 739-8 일대	92,521	

○ 지정기간 :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2. 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1) 구역변경 1개소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선정지(1개소)

대상지역	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82,320.2	84,389.0	증 2,068.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지정기간 :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붙임 1 (지정 7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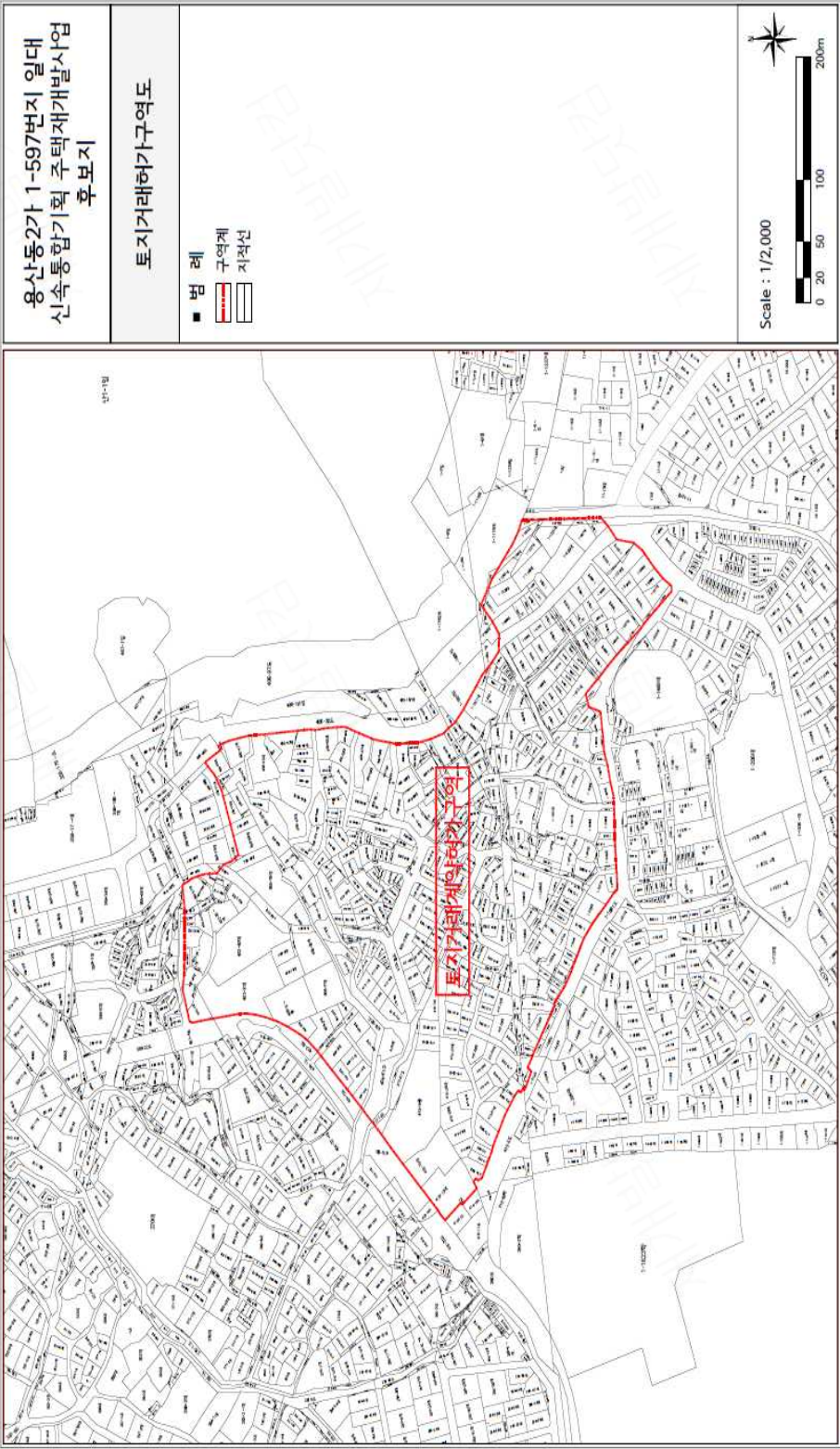
- 붙임 2 (조정 1개소)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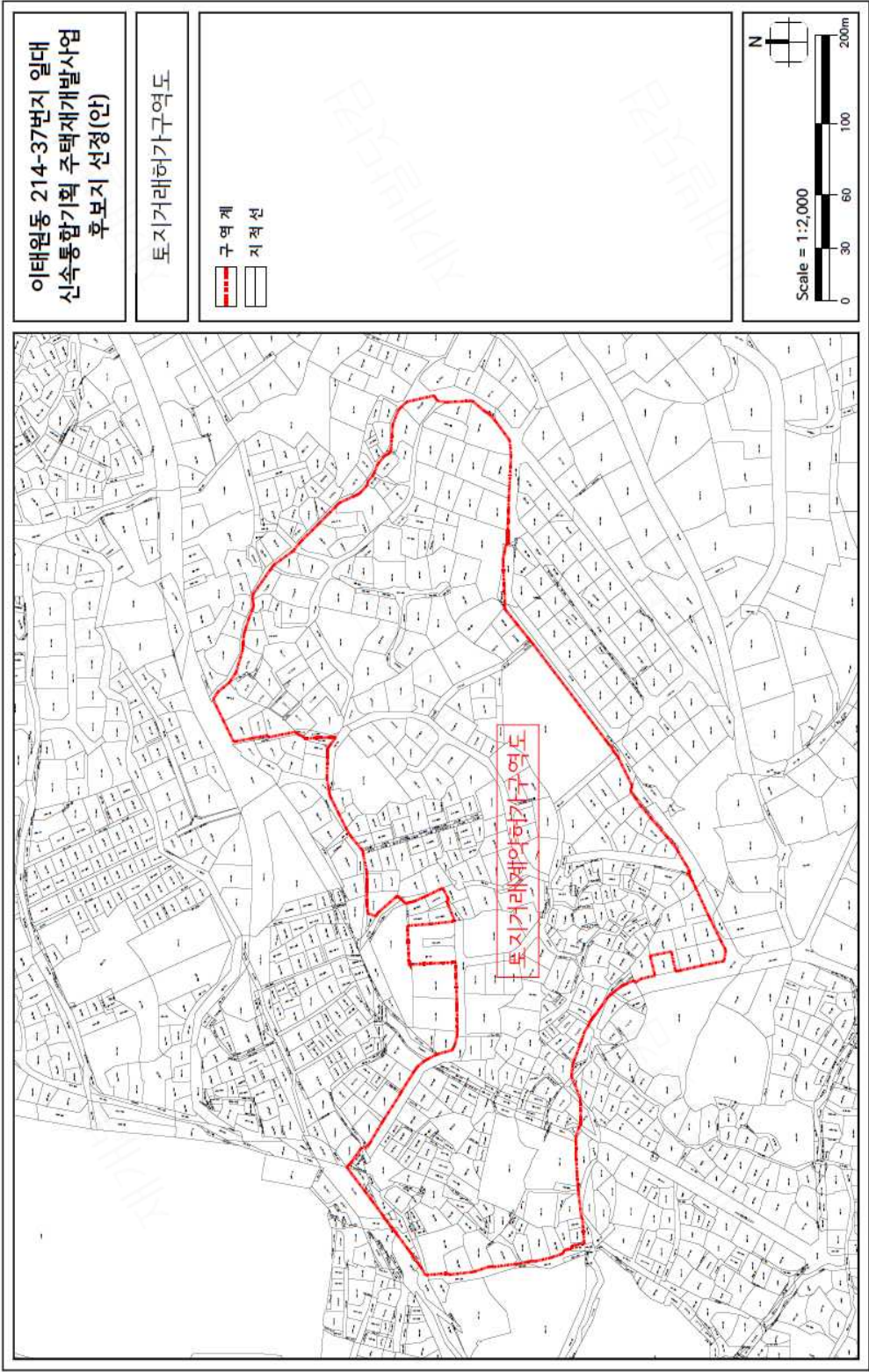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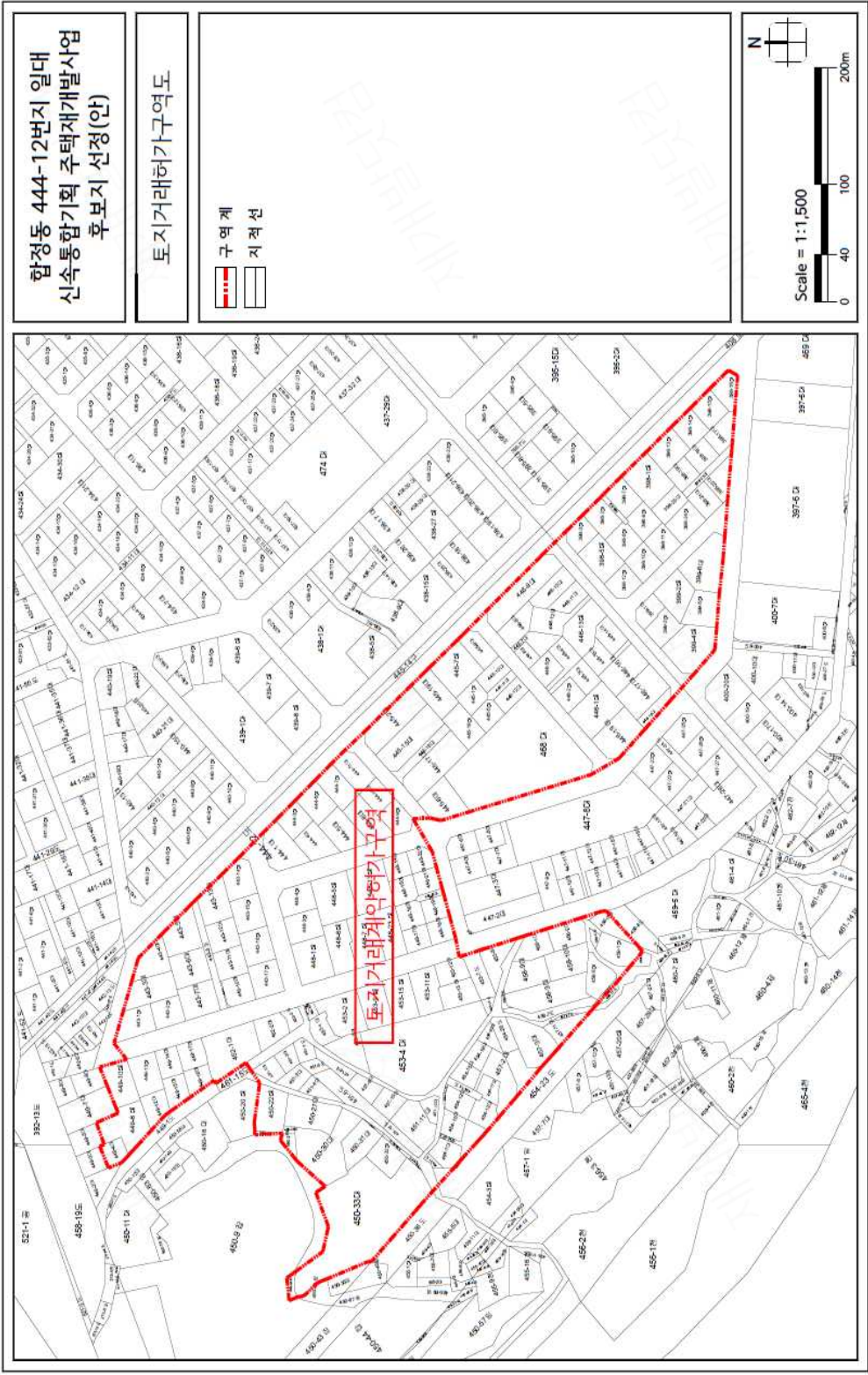
1.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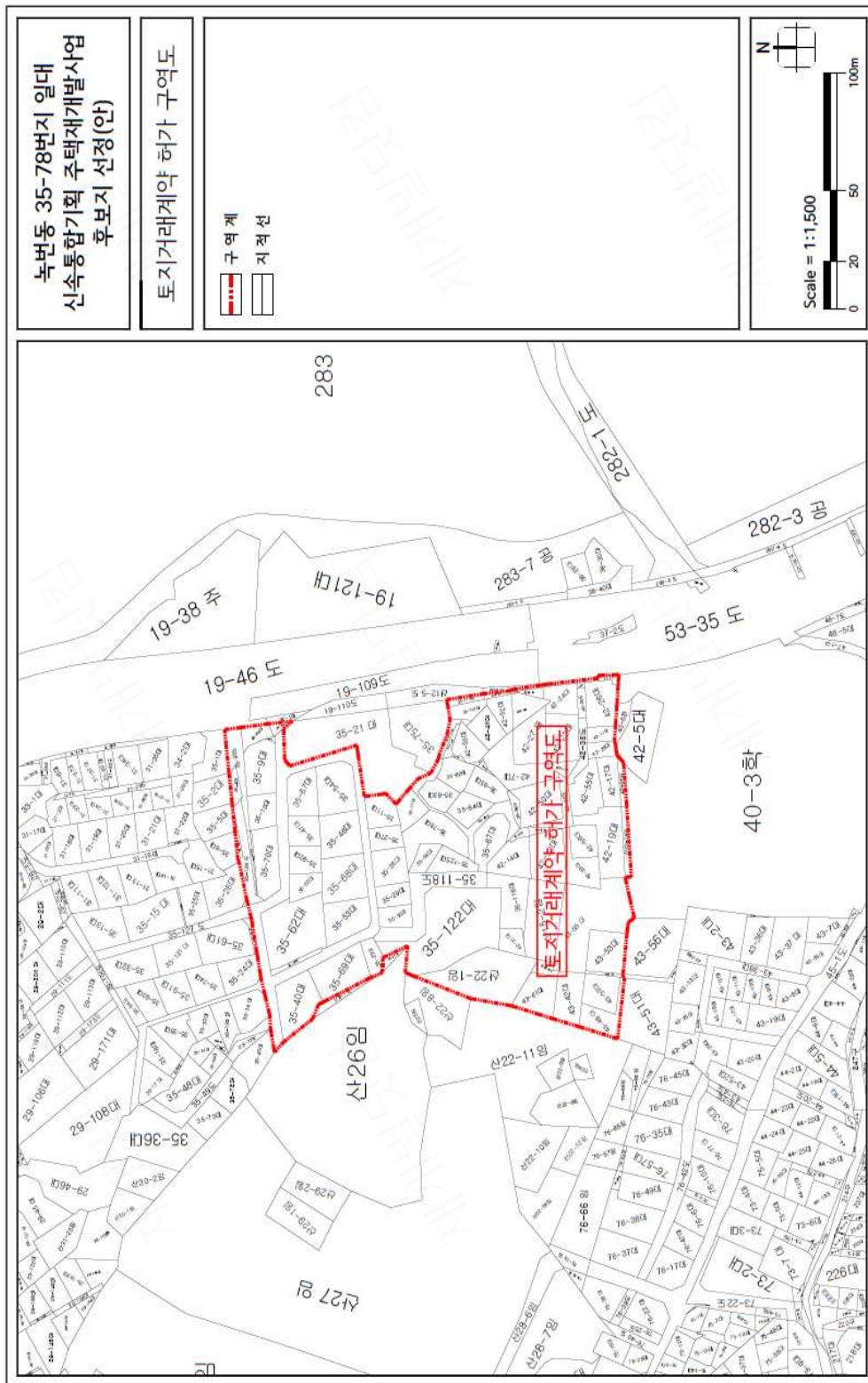
2.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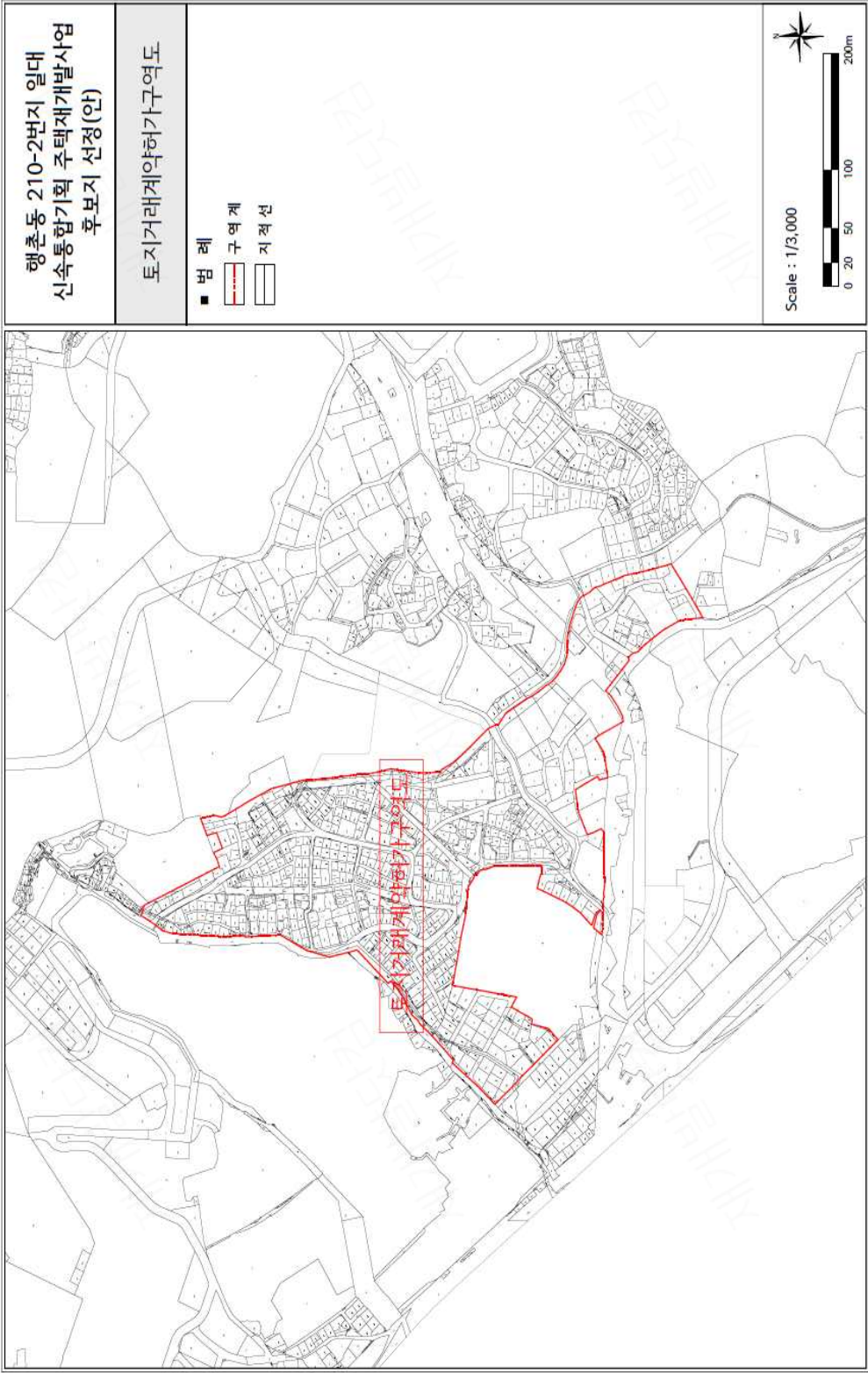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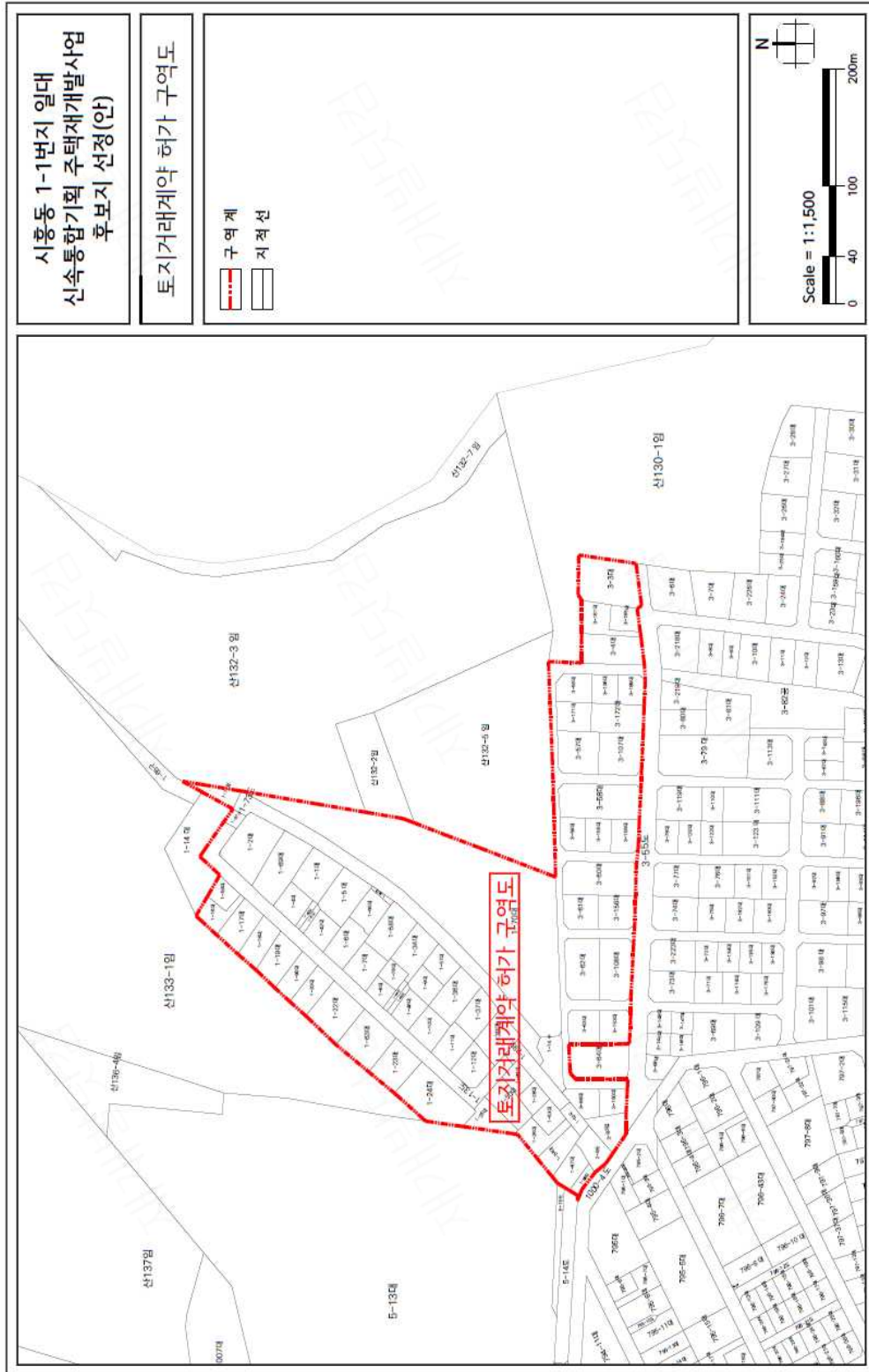
4. 은평구 노변동 35-7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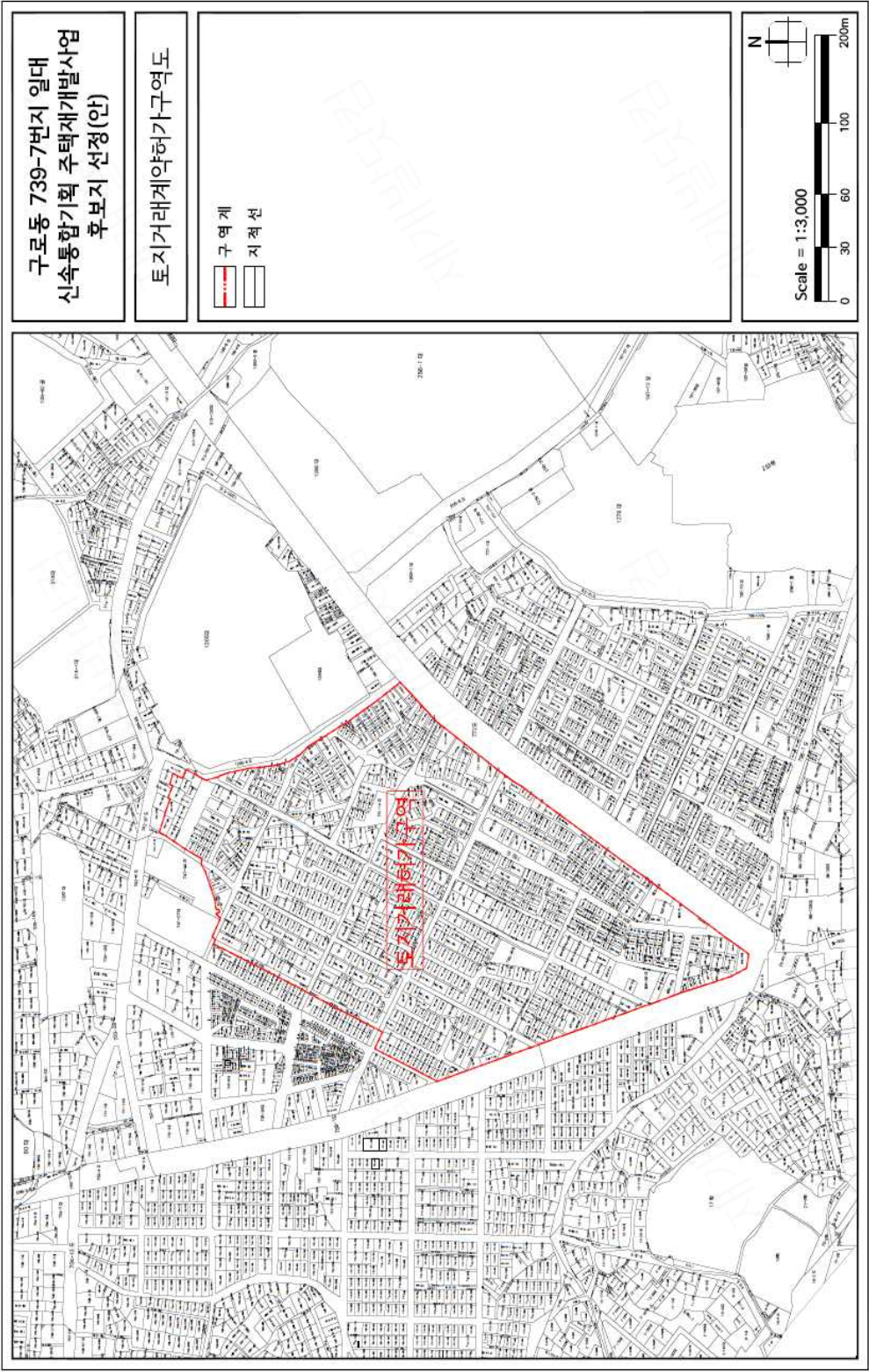
5.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6.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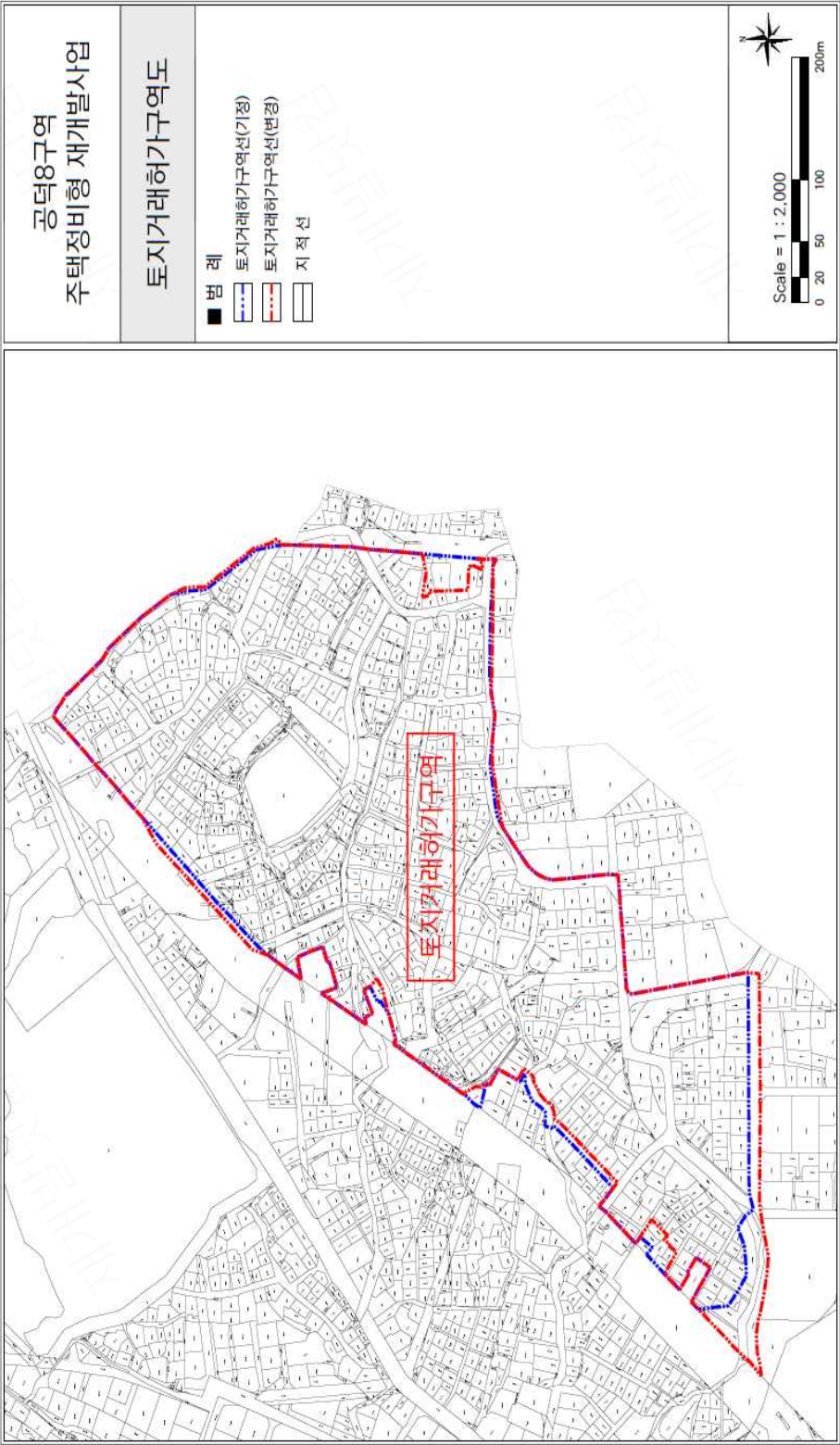


7.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조정

붙임 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7호****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평정규칙 제24조제2항 단서”를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전출 제한의 예외) 영 제27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류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0의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의 개정 사항은 2027.1.1.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 나.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 동기부여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 다. 인사규칙의 불명확한 문구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근무경력 가산점 (제33조의2)
 - 인사규칙 제33조의2 조항의 문구 정비
 - 제33조의2 제1항 문구 중 ‘제24조제2항 단서’를 ‘제24조제2항제1호’로 명확화
- 나. 전출 제한의 예외 신설 (제3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개정사항 반영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함
- 다. 가산점 부여 직위 지정 (별표 20)
 -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 추가
 - 교육지원청 감사 직무의 난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감사업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정(2020. 12. 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함

나. 이에 조례가 폐지(2022. 1. 6.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가 소멸한 동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25-1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3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 2020-3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호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735.45㎡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비고(변경사항)
			지적	편입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전	1,732.00	1,732.00	· 기정) 관목 4,918주 → 변경) 교목 61주, 관목 110주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대	22.00	2.45	· 기정) 관목 74주 → 변경) 관목 20주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4-411	대	1.00	1.0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열람장소 : 성동구청 10층 공원녹지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 업 명 : 응봉근린공원 조성
- ☐ 사업 시행자 : 성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735.45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14-3	전	1,732	1,732	김○경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정안로○○번길 ○○, ○층	○○신용 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경수대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지분5분의1
					최○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 ○○동 ○○호	근저당권설정			
					김○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 ○○동 ○○호				지분5분의1
					심○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인봉로 ○○, ○○동 ○○호				지분5분의1
					이○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동 ○○호				지분5분의1
					최○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길 ○-○				지분5분의1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063	대	22	22*79 /1620	○○지주 주택개량재개발 조합 (조합장 정○○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000-00 (조합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000-000)				
					○○지주 주택개량재개발 조합 (조합장 정○○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000-00 (조합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000-000)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4-411	대	1	1	박○○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000-000				지분 857분의103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000-000				지분 857분의113
					김○○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000-00				지분 857분의132
					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000-00 000이파트 00-000				지분 857분의132
					이○○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000 000이파트 000-000				지분 857분의132
					정○○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이동 000 000이파트 00-000				지분 857분의113
					김○○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00 000이파트 000동 0000호				지분 857분의132

(붙임2)

사업대상지 위치도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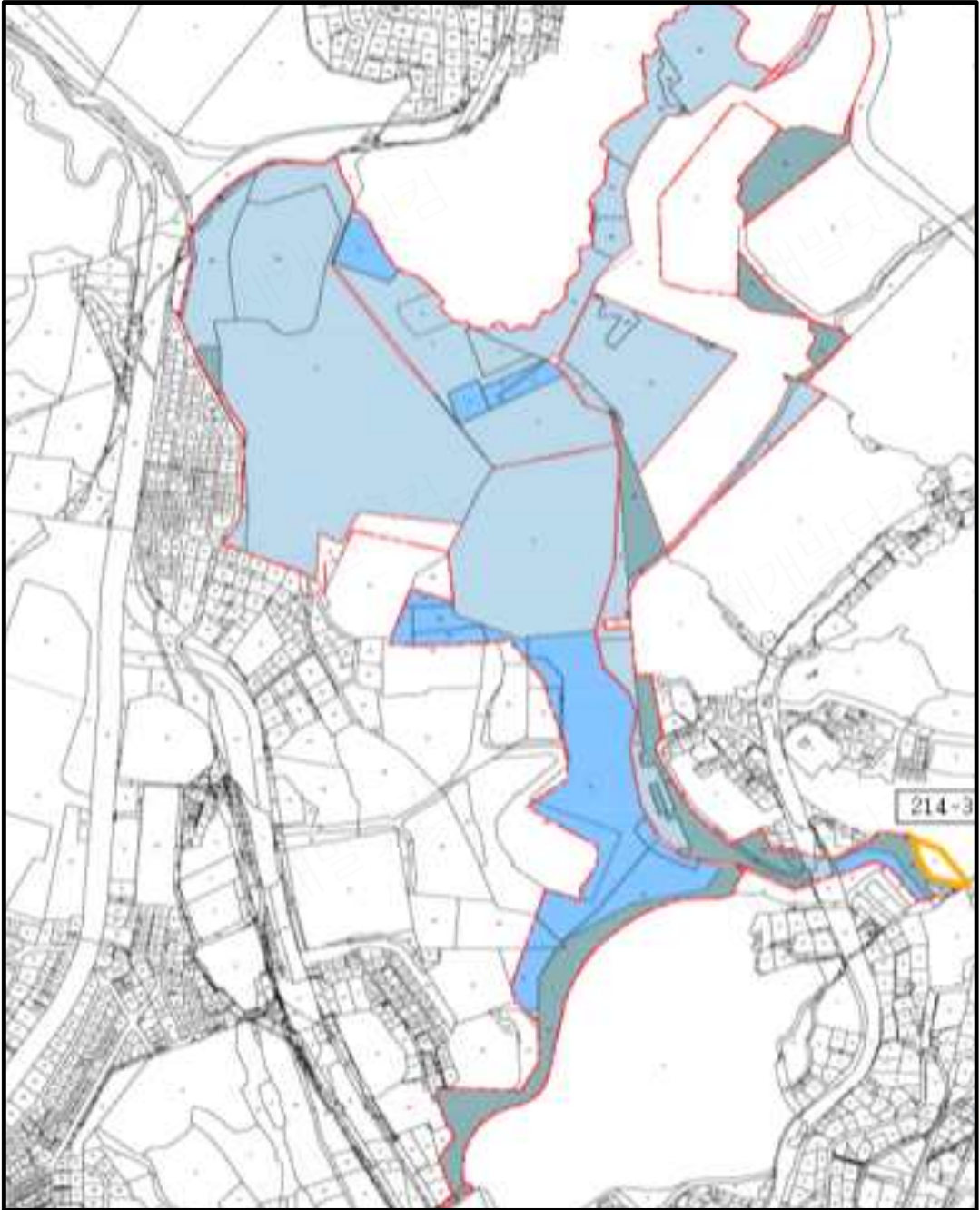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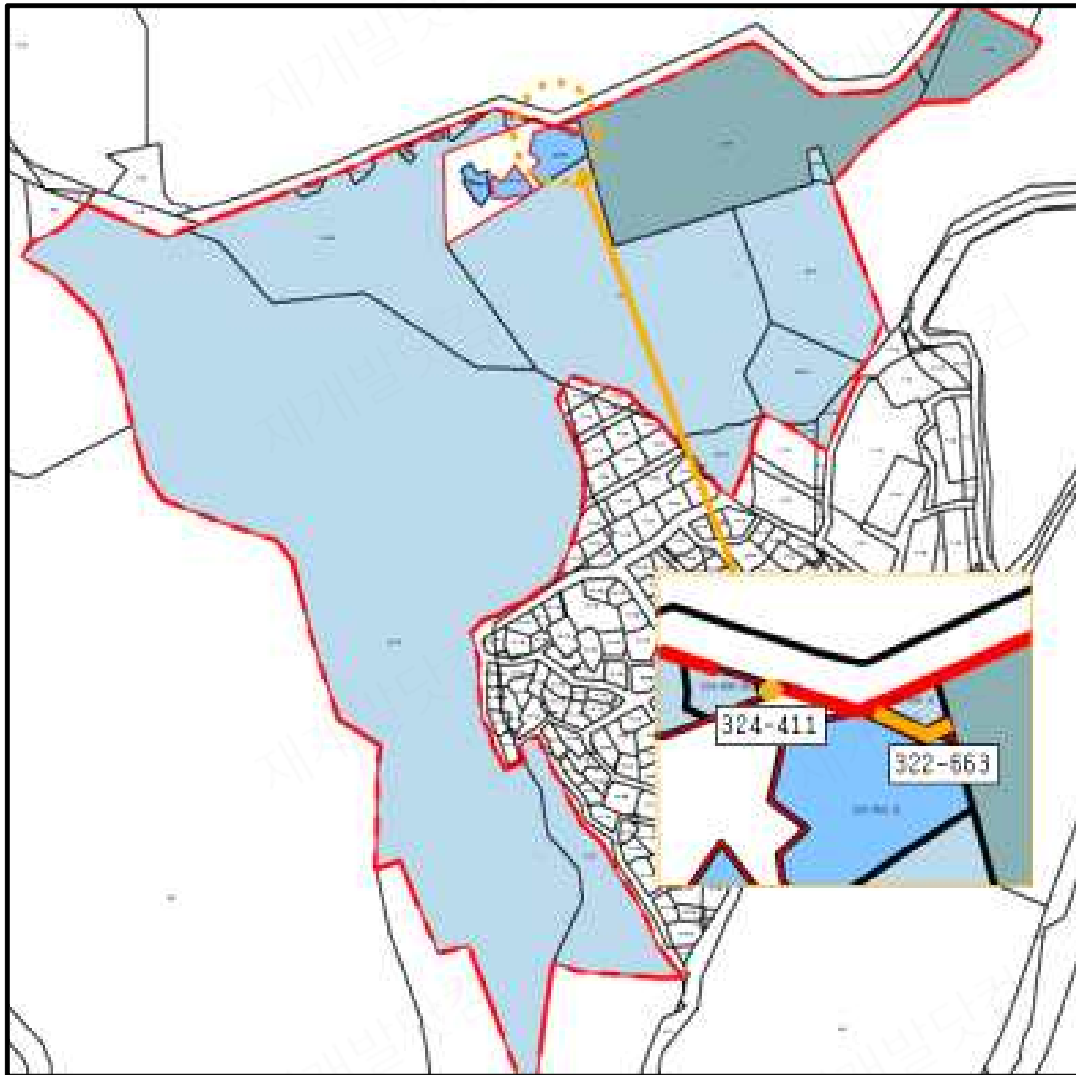
(붙임3)

계획평면도(보상용지도)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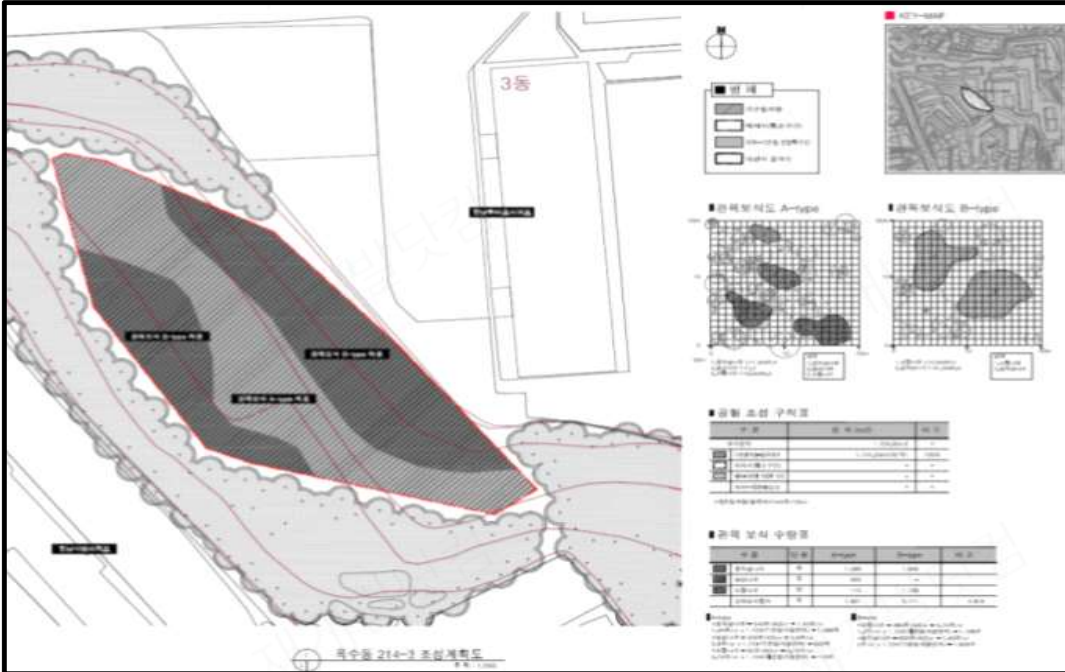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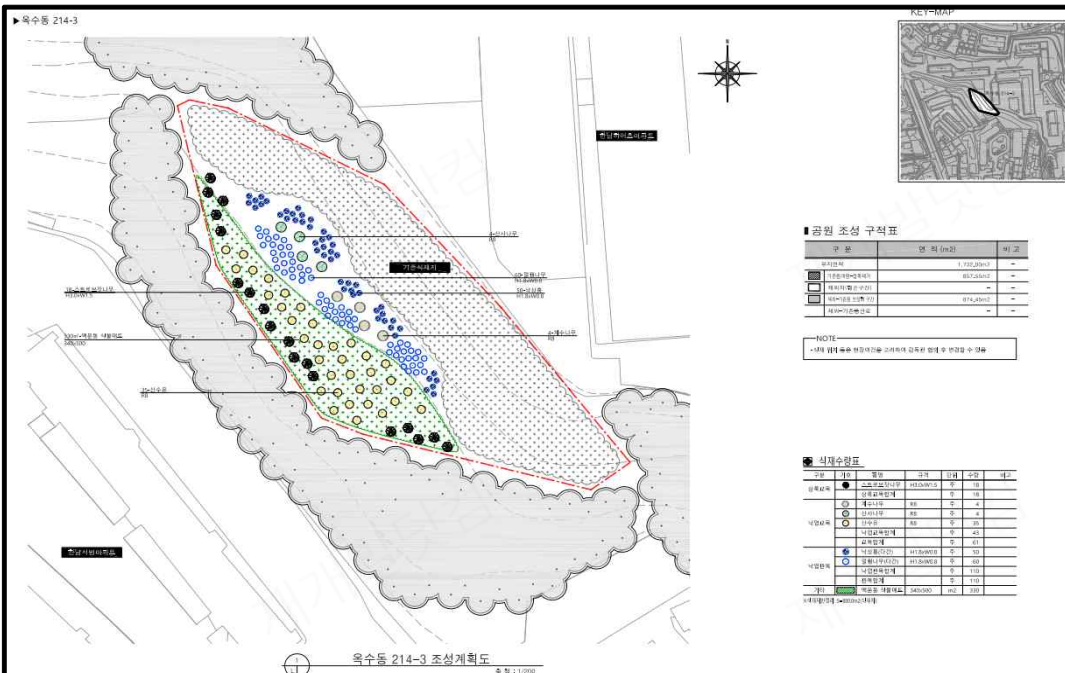
(붙임4)

공사 설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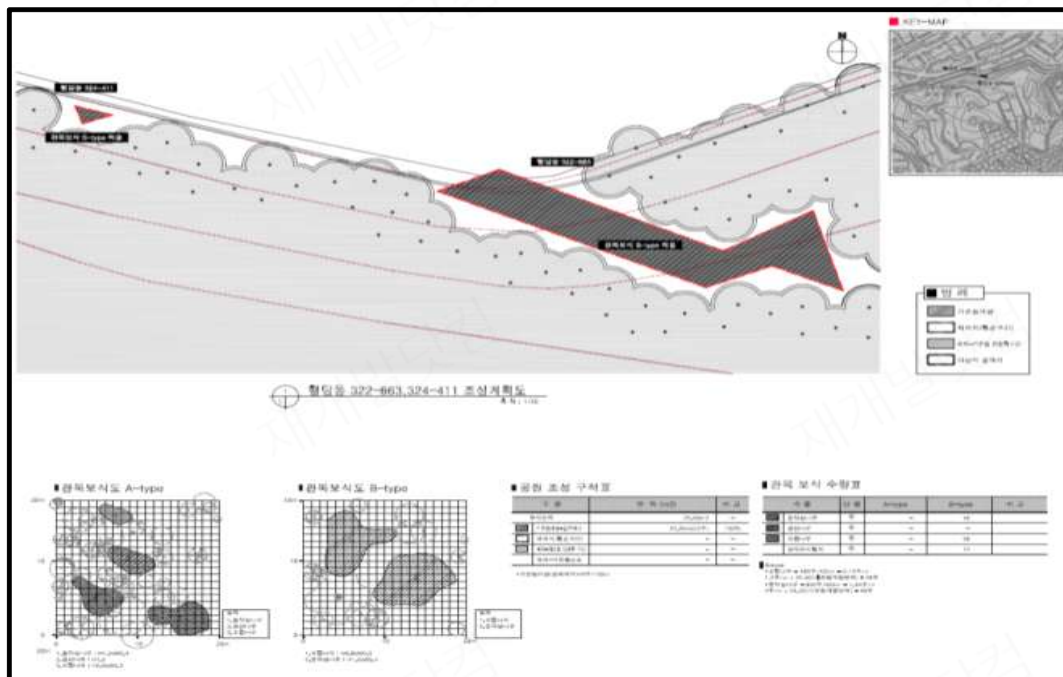
○ [당초]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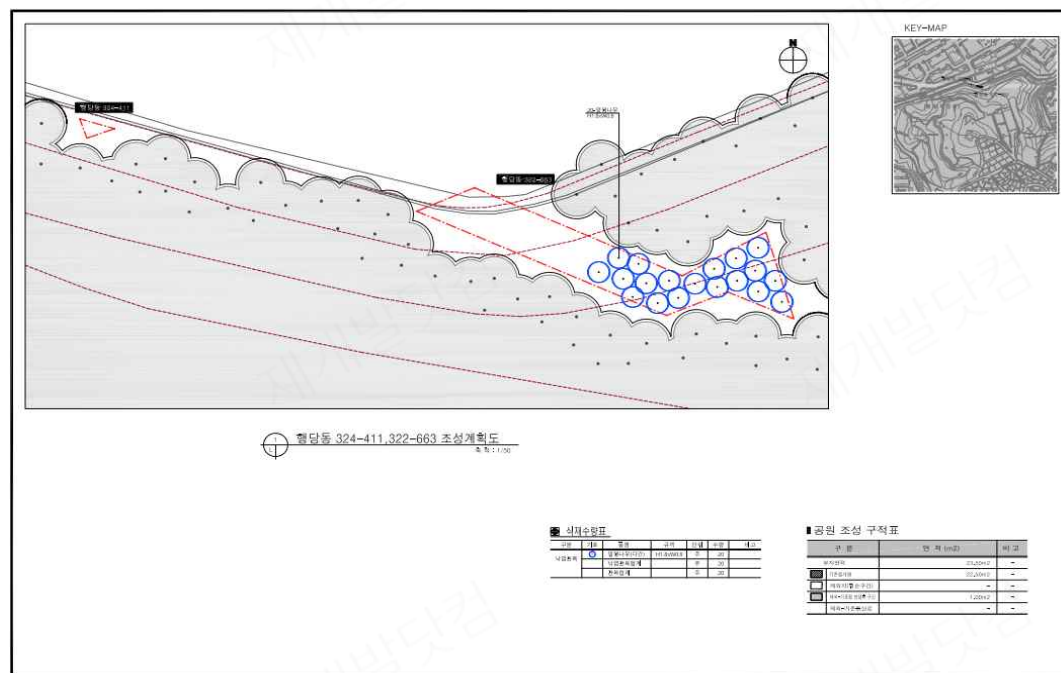
○ [변경]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 [당초]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 [변경]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 성북구고시 제2025-162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변경) 및 성북구고시 제2019-99호(2019.6.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21-99호(2021.6.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일대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32,090㎡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

○ 착 수 일 : 2019. 6. 13.

○ 준공예정일 : 2026. 6. 12.(기간 연장)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 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안암동5가	산1-55	임야	4,513	4,5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2	안암동5가	산1-93	임야	12,664	12,6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3	안암동5가	산1-95	임야	14,777	14,7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4	안암동5가	산1-96	임야	136	1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 은평구고시 제2025-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493호(1966. 6. 21.)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취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현황에 부합하도록 결정(경미한변경)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건고 제2493호 (1966.6.21.)	• 선형 일부조정 -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 시·종점 변경 없음

나. 도로 결정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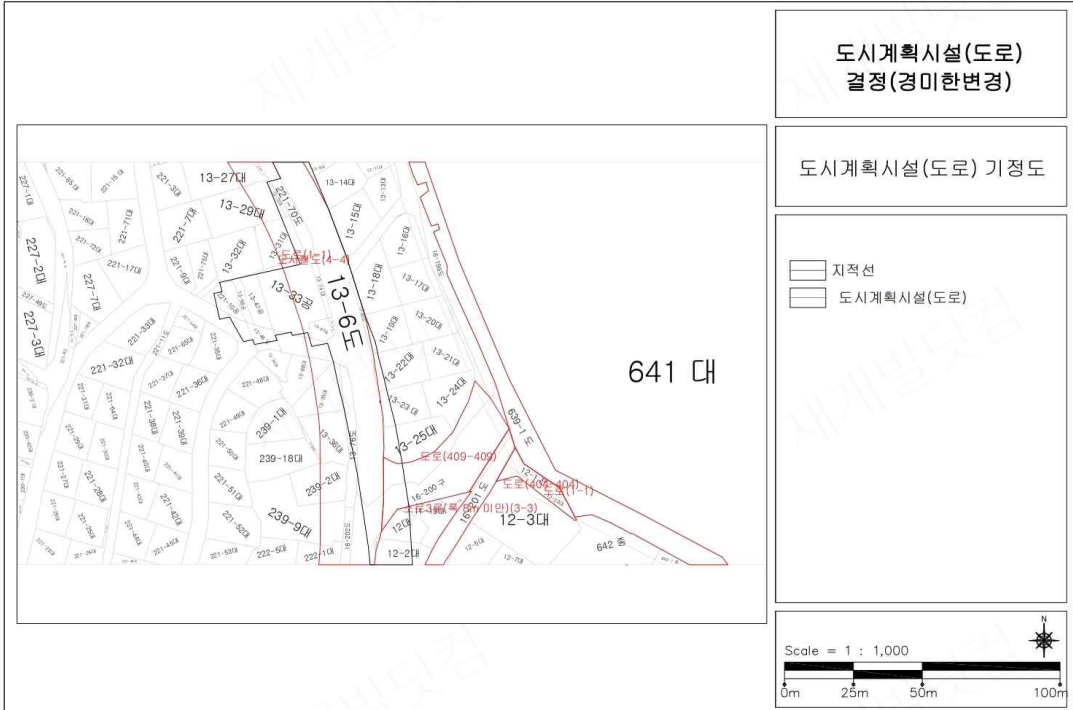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류	중로1류	• 선형 일부조정 • 불광동 13-22 필지 •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 시·종점 변경 없음	• 현황에 부합하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변경

3. 관계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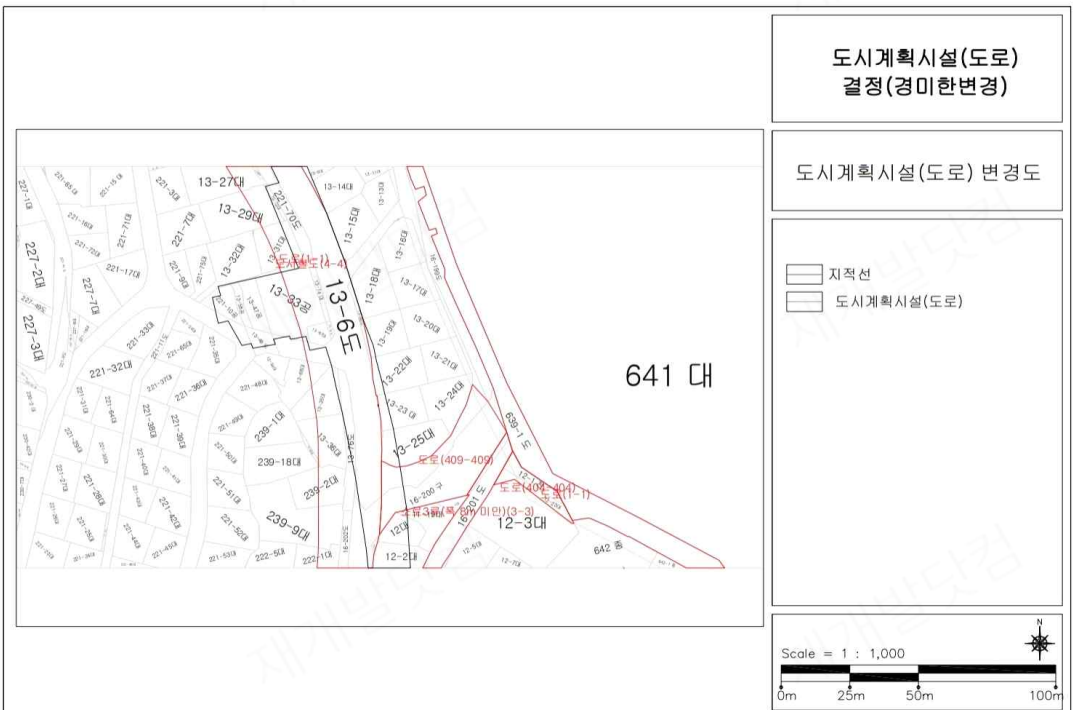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변경)



◆ 동작구고시 제2025-1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22호(2025.2.27.)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된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3-22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다. 사업규모

- 규 모 : 3,096.5㎡

- 용 도 : 사회복지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입권 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평면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정통성내용	
1	상도동 283-226	임야	3,096.5	3,096.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3,096.5/3,096.5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000	한○호				기존무허가 건물
2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000	임○준				기존무허가 건물
3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000	이○원				기존무허가 건물
4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000	박○기				기존무허가 건물

◆ 송파구고시 제2025-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08.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84호(2023.06.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19호(2024.05.02.)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45호(2025.04.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02-2147-29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송 파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사업의 명칭: 한국체육대학교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승강기 증축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111,902.30㎡
 - 건축연면적: 107,779.93㎡
 -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 마. 사업시행기간
 - 다목적체육관 · 실내수영장 · (천마)기숙사 증축, 행복기숙사 신축(변경없음)
 - 골프연습장 증축: (기정) 착공일로부터 ~ 2025.9.30. ⇒ (변경) 착공일로부터 ~ 2026.3.4.
 - 변경사유: 문화재 지표조사, 급수배관 이설 등으로 공사 지연되어 시행기간 변경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없음
2.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 (☎02-2147-2995)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5-1091호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147호(1980.5.19.)로 구역 변경,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소공 제4구역 내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5. 11. 5. ~ 2025. 12. 5. (31일간)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6)
- 다. 의견제출방법 :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라. 관계서류 : 생략 (공람장소 비치 문서와 같음)
-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I. 소공 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소공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공 제4구역	소공동 30,51,74번지	18,783.0	건설부 고시 제147호 (1980.05.19.)	-

- 3)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각 지구별 개발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정비방식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 제4구역	7지구	존치지구	소공동 32-7일대	4,213.2	증) 86.7	4,299.9	-
기정		8지구	존치지구	소공동40일대	1,295.9	증) 85.6	1,381.5	-
변경		8지구	소단위정비 지구					-
기정		9지구	존치지구	소공동41일대	1,266.8	감) 97.0	1,169.8	-

※ 7,8,9지구 외 면적 변경사항 없음.(타 지구 획지 기재 생략)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7지구	• 지구면적변경	•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변경	8지구	• 정비수법 및 지구면적 변경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9지구	• 지구면적 변경	•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783.0	-	18,783.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484.45	증) 301.2	1,785.65	9.5	-
	도로	654.5	증) 301.2	955.7	5.1	-
	시장	829.95	-	829.95	4.4	서울시고시 제131호 (1973.7.30.)
획 지	7지구	4,213.2	증) 86.7	4,299.9	22.9	존치지구
	8지구	1,295.9	증) 85.6	1,381.5	7.4	존치지구→소단위정비지구
	9지구	1,266.8	감) 97.0	1,169.8	6.2	존치→시행

※ 7,8,9지구 외 면적 변경사항 없음.(타 지구 획지 기재 생략)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비기반 시설 등	현행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정비기반시설 개선
획 지	7지구, 8지구, 9지구 획지 면적 변경	7,9지구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8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20	소공동 24	소공동 50-18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47호 (1980.5.19.)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소로신설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②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II. 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95.9	증) 109.7	1,405.6	100.0	

※ 지구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295.9	증) 109.7	1,405.6	1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24.1	24.1	1.7	-
	도 로	-	증) 24.1	24.1	1.7	-
획 지	소계	1,295.9	증) 85.6	1,381.5	98.3	-
	획지	1,295.9	증) 85.6	1,381.5	98.3	-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비기반 시설 등	현행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 정비기반시설 개선
획 지	획지면적 증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 소로신설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4)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 소로신설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구분	사업지구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현금 기부 채납 환산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 담률 (%)	비고
				계	토지			환산 면적 (㎡)	대지 지분 (㎡)				
변경	8지구	1,405.6	1,381.5	24.1	24.1	-	-	27.8	48.0	38.6	138.5	9.85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①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관리청)
신규	청년창업센터	소공동 40	• 토지지분 48.0㎡ • 연면적 626.91㎡	층수: 지상 10층 (중구청장)

5)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결정구분	부담면적(㎡)	산출근거	비고
현금기부채납	38.6㎡	• 3,665,608,470원(개략치) • 산식 : 현금 기부채납액 / 부지가액(공시지가 평균액의 2배)	토지환산면적

※ 사업시행자는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납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8지구	1,295.9	획지	1,295.9	소공동 40번지 일대	1	-	-	1	-	-
변경		1,405.6		1,381.5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8지구	1,295.9	획지	1,295.9	소공동40일대	주차장	49.77	497.7	35.5	존치 지구
변경	8지구	1,405.6	획지	1,381.5	소공동40일대	업무시설	60이하 저층부(5층이하) 80이하 주1)	830이하	90이하	소단위 정비지구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	• 용적률 : 600% → 658%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58%									
	목 적		인센티브 요건 및 완화량					산정방식		완화량
	도시경제 활성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 X 보상계수 =600% X (339.15㎡/1,381.5㎡) X 0.4 = 58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58%
			계							58%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172%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81%									
	구 분		내 용							
	기반시설 부담		·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및 현금납부							
	인센티브 산식		· 상한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1+(1.3×α토지)(1.2×α건축물)+(1×α현금)] *α토지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72.1㎡/(1,405.6㎡-72.1㎡)=0.0541 *α건축물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27.8㎡/(1,405.6㎡-72.1㎡)=0.0209 *α현금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38.6㎡/ (1,405.6㎡-72.1㎡)= 0.0289							
	적용내용		· 658×[1+(1.3×0.0541)+(1.2×0.0209)+(1×0.0289)]=739%							
			완화량						81%	
- 친환경 인센티브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공 : 91%										
구분		산정기준		계획기준		적용량				
친환경 건축물		우량(그린3등급)		우수(그린2등급): 3%		658(허용용적률)X14% =92% (91%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5등급 : 11%						
높이	• 높이계획: 90m 이하 주2)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 남대문로변 3m, 대상지 남측도로 1m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남대문로변 활성화를 위한 전면배치								
	전면 공지	• 보행공간 마련을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								
기타 사항	가로활성화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7호판매시설 중 상점								
	저층부 외관	• 1층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구조								

주1)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높이는 90m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국은행 문화보호 3구역에 해당하여 높이 확보 어려움으로 저층부 건폐율(5층 이하) 완화 적용

주2-1)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용 기준 및 문화재 주변 높이기준을 우선 적용함.

주2-2) 문화유산 보존 영향성 검토 결과 옥상, 파라펫, 옥탑계단탑, 승강기 탑 등 이와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55.6m 이하로 적용함.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1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중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중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중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73,163,702 + 8,296,893 + 553,546,355) / 635,006,950 = 100% = 1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총 사업비)</td><td>계</td><td>635,006,950</td><td></td></tr> <tr> <td>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td><td>84,460,595</td><td>①</td></tr> </tbody> </table>			구분		금액(천원)	비고	중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총 사업비)	계	635,006,950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	84,460,595	①
구분		금액(천원)	비고											
중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총 사업비)	계	635,006,950												
	분양예정지 대지평가액	84,460,595	①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tr><td></td><td>신축건물시설 평가액</td><td>550,546,355</td><td>②</td></tr><tr><td></td><td>대지조성비</td><td>3,000,000</td><td>③</td></tr><tr><td></td><td>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td><td>73,163,702</td><td>④</td></tr><tr><td></td><td>총 대지평가차액</td><td>8,296,893</td><td>① - ③ - ④ = ⑤</td></tr><tr><td></td><td>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치)</td><td>553,546,355</td><td>② + ③ = ⑥</td></tr></table>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중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부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중후평가 권장)	구분		금액(천원)	비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550,546,355	②		대지조성비	3,000,000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73,163,702	④		총 대지평가차액	8,296,893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치)	553,546,355	② + ③ = ⑥
구분		금액(천원)	비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550,546,355	②																						
	대지조성비	3,000,000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73,163,702	④																						
	총 대지평가차액	8,296,893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치)	553,546,355	② + ③ = 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69,944,422(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69,944,422(⑦) / 73,163,702(④) ≒ 86.03%(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8,296,893(⑤) × 86.03%(⑧) ≒ 7,138,009(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62,944,422(⑦) + 7,138,009(⑨) = 70,082,431(⑩) - (A)의 지분율 = 70,082,431(⑩) / 635,006,950(①+②) ≒ 11.04%																								
추정 수익률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00%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629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th><th>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천원)</th><th>개별 분담금 (천원)</th><th>비고</th></tr><tr><td>업무시설</td><td>일괄적용</td><td>32,287</td><td>176,499,000</td><td>70,082,431</td><td>106,367,000</td><td>사업시행 자 징수</td></tr></table>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시설	일괄적용	32,287	176,499,000	70,082,431	106,367,000	사업시행 자 징수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업무시설	일괄적용	32,287	176,499,000	70,082,431	106,367,000	사업시행 자 징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12)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해당없음
- 1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을 통한 지형변동 및 토량이동 최소화 - 투수성포장의 최대한 확보를 통한 우수영향 저감 - 건설폐기물 발생 시 최대한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

1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6)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2019.7』 개선안 반영 -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3개소)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출입구 운영방안 제시(1개소) - 사업지 남측 진출입로 전일 일방통행 운영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 남대문로 보도 설치(B=4.0m, L=8.8m) - 남대문로 전면공지내 보행공간 확보(B=3.0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2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99대(최고한도) - 주차수요 : 87대(원단위법, 2033년) - 계획주차대수 : 76대(법정 최고한도 대비 76.8%, 수요대비 87.4%) - 확장형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30%이상 확보 - 장애인주차 : 법정주차대수의 3%이상 확보 - 가족배려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10%이상 확보 - 전기차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5%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2개소) - 사업지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1개소)

항 목	개 선 방 안
	• 시거 불량지점 반사경 설치(1개소)
	• 요일별 우회전 허용 노면표시 및 표지판 삭제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기본방향에 따름
-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19)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이하여백-

III. 소공 제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동 30, 51, 74번지	18,783.0	-	18,783.0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공람도서 참조

IV. 8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공람도서 참조

V. 관계도면

1.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2. 지구단위계획 : 공람도서 참조

VI.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고시 이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공고 제2025-1100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27호(1994.10.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2024.04.18. 정비사업 통합심의 후, 2025.09.08. BF예비인증 완료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원조성계획(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 구 청 장

1. 공원종류: 어린이공원(1개소)
2.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번지 일대
3. 면 적: 2,828㎡
4. 조성계획(안): 별첨 조서 참조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7.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28.00	1,036.87	-	-	-	114	-
기반	소 계	360.16	360.16	-	-	-	55	-
	도 로	314.82	314.82	-	-	-	2	-
	광 장	45.34	45.34	-	-	-	53	-
조 경 시 설		-	-	-	-	-	-	-
휴 양 시 설		204.92	204.92	-	-	-	5	-
유 희 시 설		335.10	335.10	-	-	-	3	-
운 동 시 설		129.52	129.52	-	-	-	4	-
관 리 시 설		14.89	14.89	-	-	-	1	-
녹지 및 기타		1,783.41	1,783.41	-	-	-	46	-
시 설 률 (법정 60%)		1,044.59㎡/2,828.00㎡ *100=36.94%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828.00	1,044.60	-	-	-	-	114
기 반 시 설	소 계			360.16	360.16	-	-	-	-	55
	도 로			314.82	314.82	-	-	-	-	
	광 장	가-1		45.34	45.34	-	-	-	-	
	앞음벽	①								2
	볼라드	②								16
	점자유도블럭	③								37
휴 양 시 설	소 계			204.92	204.92	-	-	-	-	5
	휴게쉼터-1	나-1		126.42	126.42	-	-	-	-	
	휴게쉼터-2	나-2		27.54	27.54	-	-	-	-	
	휴게쉼터-3	나-3		47.71	47.71	-	-	-	-	
	휴게쉼터-4	나-4		3.25	3.25	-	-	-	-	
	계단	④								1
	티하우스	⑤								2
유 희 시 설	소 계			335.10	335.10	-	-	-	-	3
	어린이놀이터	다		335.10	335.10	-	-	-	-	
	조합놀이대	⑦								1
	무장애회전놀이	⑧								1
	트램펄린	⑨								1
운 동 시 설	소 계			129.52	129.52	-	-	-	-	4
	운동공간-1	라-1		64.56	64.56	-	-	-	-	
	운동공간-2	라-2		64.96	64.96	-	-	-	-	
	야외운동기구A	⑩								2
	야외운동기구B	⑪								1
	야외운동기구C	⑫								1
관 리 시 설	소 계			14.89	14.89	-	-	-	-	1
	옹벽	마		14.89	14.89	-	-	-	-	
	조경석쌓기	⑬								1
녹 지 및 기 타	소 계			1,783.41	-	-	-	-	-	46
	녹지 및 기타	바-1		1,783.41	-	-	-	-	-	
	종합안내판	⑭								1
	방향안내판	⑮								1
	점자안내판	⑯								4
	미스트볼라드	⑰								4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86.91	314.82				
신설	산책로	소 계			186.91	314.82				
신설	산책로	-	1	1.8	9.33	16.79	연결로	가-3	가-2	
신설		-	2	1.8	69.61	125.29	연결로	가-1	가-2	
신설		-	3	1.6	95.46	152.73	산책로	산-2	가-2	
신설		-	4	1.6	12.51	20.01	연결로	가-4	산-3	

조성계획도

마포로5 어린이공원 조성



범례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적률	비고
기타시설	간-1	도로	16.79		
	간-2	도로	125.29		
	간-3	도로	152.73		
	간-4	도로	20.01		
가-1	가-1	광장	11.79		
	가-2	광장	10.73		
	가-3	광장	6.53		
	가-4	광장	16.29	2	
(1)	(1)	양생벽			
	(2)	플라드			
	(3)	점자도블럭			
	계		380.16	16	
휴게시설	나-1	휴게장하-1	126.42		
	나-2	휴게장하-2	27.54		
	나-3	휴게장하-3	47.71		
	나-4	휴게장하-4	3.25		
(4)	(4)	계단			
	(5)	타라루스			
	(6)	그늘막지			
	계		204.92	5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적률	비고
유치시설	다	어린이놀이터			
	(7)	조각놀이대	335.10	1	
	(8)	무지개화장놀이			
	(9)	프린팅판	335.10	1	
운동시설	라-1	운동공간-1	64.56	3	
	라-2	운동공간-2	64.96		
	(10)	아래운동기구A			
	(11)	아래운동기구B			
(12)	(12)	아래운동기구C			
	계		129.52	4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적률	비고
문화시설	마	음벽	14.89		
	(13)	조경석물기	14.89	1	
	바		1,783.41		
	(14)	종횡안내판			
복합시설	(15)	광장안내판			
	(16)	점자안내판			
	(17)	마스트플라드			
	계		1,783.41	46	
합 계			2,688.00	114	

◆ 구로구공고 제2025-1900호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부고시 제2010-806호(2010.11.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되고, 국토부고시 제2024-504호(2024.09.24.)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구로구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현황

가. 시설명 :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나. 위치 : 서울시 구로구 항동 75 일대

다. 면적 : 14,425.60㎡

2. 공고내용 :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가. 목적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후 2026년 SH공사→구로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발사업 중 공원 내 풋살장 및 휴게시설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변경코자 SH공사에서 의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변경내역 : 공원 내 풋살장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면적 반영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14,425.60	14,425.60	-	103.00	739.41	증)636.41

· 기반시설 : 0.00㎡ → 98.74㎡ (증 98.74㎡)

· 휴양시설 : 103.00㎡ → 125.11㎡ (증 22.11㎡)

· 운동시설 : 0.00㎡ → 515.56㎡ (증 515.56㎡)

· 녹지 : 14,322.60㎡ → 13,686.19㎡ (감 636.41㎡)

3. 열람기간 : 2025. 11. 7. ~ 11. 2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02-860-3088)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항동 75 일대)

구	본	전						경						비 고
		변		경		전		변		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기 단 시 설	14,425.60	103.00				25	14,425.60	739.41				42	시설면적 증가 636.41㎡ (증 17기)
		소 계							98.74	98.74				증 98.74㎡
		도 로							9.83	9.83				증 9.83㎡
		광 장							88.91	88.91				증 88.91㎡
조 경 시 설												5	증 5기	
유 회 시 설														
휴 양 시 설		103.00	103.00				3	125.11	125.11				4	증 22.11㎡ (증 17기)
교 양 시 설														

구분	변경				전경				변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은둔시설							515.56	515.56				2	증 515.56㎡ (증 27%)	
편익시설														
관리시설					22							31	증 9기	
그밖의시설														
녹지 및 기타	14,322.60						13,686.19						감 636.41	
시설율 (범정 40%)	(103.00 / 14,425.60) × 100 = 0.71%					(739.41 / 14,425.60) × 100 = 5.12%					증 4.41%			
건폐율 (범정 10%)	-					-								

2.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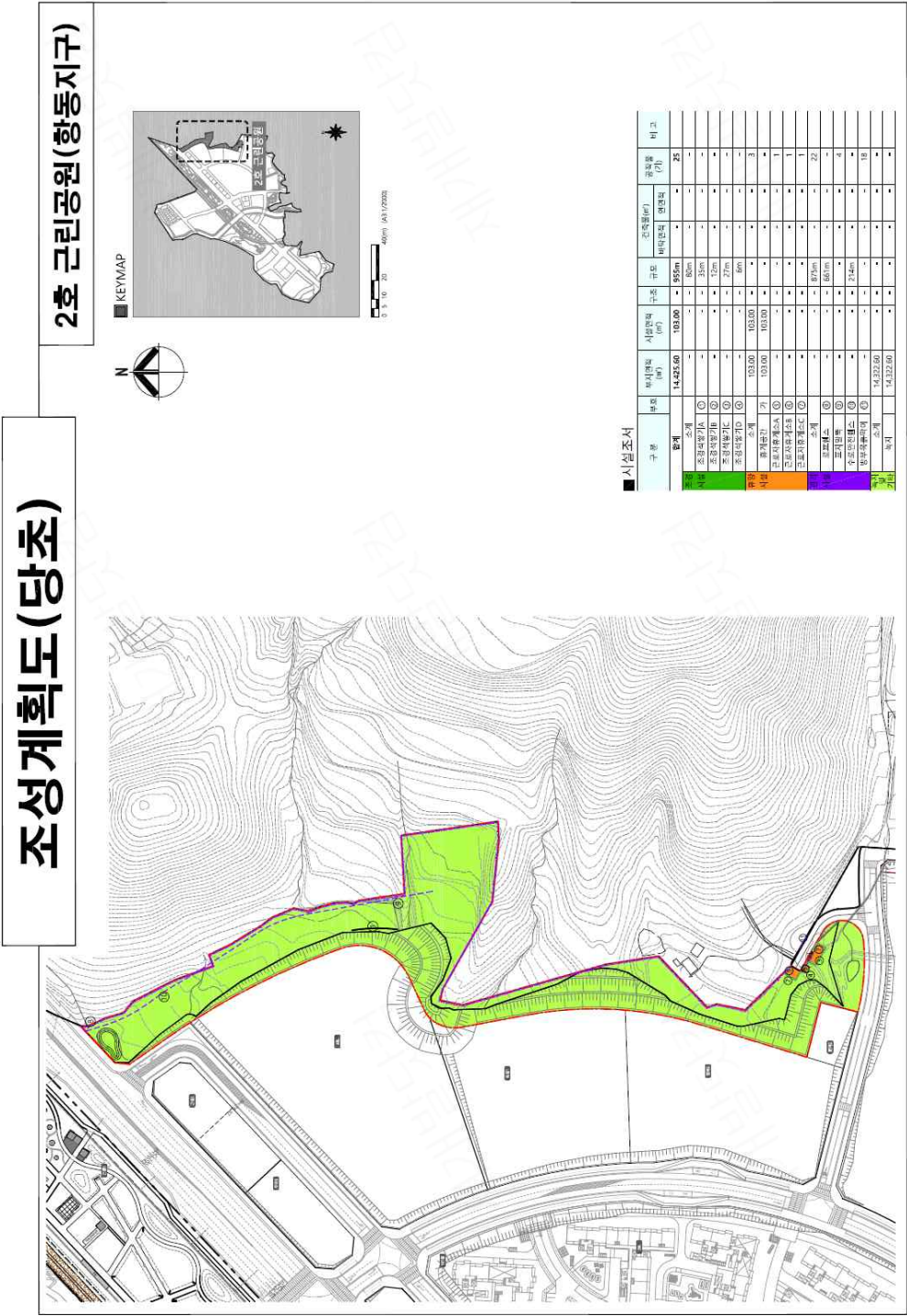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4,425.60	103.00		995m			25			14,425.60	739.41					42	증 636.41
	소 계											98.74	98.74						증 98.74
도 로												구로구 향동 75-2	9.83	9.83					신설
광 장										나		구로구 향동 75-2	88.91	88.91					신설
소 계						80m												5	
조경석쌓기A	①	구로구 향동 77-1				35m				①	구로구 향동 77-1							1	35m
조경석쌓기B	②	구로구 향동 신36-1				12m				②	구로구 향동 신36-1							1	12m
조경석쌓기C	③	구로구 향동 신36-1				27m				③	구로구 향동 신36-1							1	27m
조경석쌓기D	④	구로구 향동 신36-1				6m				④	구로구 향동 신36-1							1	6m
경관옹벽										㉔	구로구 향동 76-1							1	신설
기 반 시 설										조 경 시 설									

구 분	경 변 전						경 변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한 양 시 선	소 계		103.00	103.00						3							4	증 22.11	
	휴게공간	가	구로구 향동 145-3	103.00							가	구로구 향동 145-3	103.00	103.00					
	휴게쉼터										다	구로구 향동 75-2	22.11	22.11					신설
	근로자휴게소A	⑤	구로구 향동 145-7							1	⑤	구로구 향동 145-7						1	
	근로자휴게소B	⑥	구로구 향동 145-3							1	⑥	구로구 향동 145-3						1	
안 보 시 선	근로자휴게소C	⑦	구로구 향동 145-3							1	⑦	구로구 향동 145-3						1	
	피고라										⑬	구로구 향동 75						1	신설
	소 계												515.56	515.56				2	증 570.59
	포설경시장										라	구로구 향동 75	515.56	515.56					신설
	포설골데										⑭	구로구 향동 75						2	신설
관 리 시	소 계						875m			22								3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서울	로프월스	⑧ 구로구 향동 75				661m				1	661m		
	표지말뚝	⑨ 구로구 향동 산34-13								4			
	수로안전월스	⑩ 구로구 향동 75				214m				1	214m		
	방부목활판이	⑪ 구로구 향동 145-3								18			
	안전월스									1	신설		
	인내판									1	신설		
보인등										5	신설		
누지 및 기타	소 계		14,322.60								13,686.19		감 636.41
	누지 및 기타		14,322.60								13,68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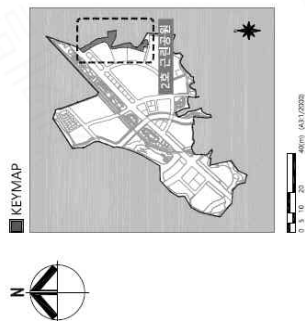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변경					6.55	9.83				
당초	산책로	소 계								
변경					6.55	9.83				
신설		-	1	1.5	6.55	9.83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나	



조성계획도(변경)

2호 그린공원(항동지구)



시설조서

구분	비고	비고 (m)	시공일 (년월일)	구로	배치(단) 및 연속(단)	연속(단) 및 배치(단)	타기 크기
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5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6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7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8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9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0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2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3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4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5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6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7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8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19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0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2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3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4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5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6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7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8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29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0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2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3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4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5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6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7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8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39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0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2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3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4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5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6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7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8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49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50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51차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73.04.1	-	-	-	42
	배치	14,62.60					

◆ 동작구공고 제2025-19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6호(1998. 8.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호(2021. 1. 7.)로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장승배기로 70, 4층, ☎ 02-820-1081)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2157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2017.4.2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6.23.)호로 변경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최초)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01번지 일원

다. 공원면적: 45,209.00㎡

2. 조성계획(안)

2. 조성계획 결정(최초)(안)

가. 목 적 :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올림픽대로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한강과 연결, 문화 시설과 신반포로를 잇는 인프라를 형성하여 문화공원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내역

- 기반시설 : 광장 및 도로 (5,296.02㎡)
- 조경시설 : 잔디마당 및 옹벽 (1,347.82㎡)
- 휴양시설 : 숲속쉼터, 전망쉼터 (1,538.39㎡)
- 유희시설 : 모래놀이터 (50.87㎡)
- 교양시설 : 전시장 (2,026.82㎡)
- 편익시설 : 주차장진입로 (138.99㎡)
- 녹 지 : 녹지 (19,442.29㎡)
- 기타시설 : 덮개구조물 (15,367.8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 결정조서. 1부.
2.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도 1부. 끝.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10번지 일대)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용(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계	45,209.00	25,766.71				122	
	소 계	5,296.02	5,296.02					
기반 시설	도 로	4,674.71	4,674.71				신설	
	광 장	621.31	621.31				신설	
조경시설		1,347.82	1,347.82				신설 8	
휴양시설		1,538.39	1,538.39				신설 27	
유희시설		50.87	50.87				신설	
교양시설		2,026.82	2,026.82	1	0.00	4,753.94	신설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토수 (탕)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시설	138.99	138.99				신설	
	관리시설					87	신설	
	녹지	19,442.29					신설	
	기타시설	15,367.80	15,367.80				신설	
	시 설 른 (법정제한없음)	(25,766.71/45,209.00) × 100 = 56.99%						
	건 폐 물 (법정 20%)	없음						

2. 시설조서

구분	최 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45,209.00	25,766.71			0.00	4,753.94	122		
	소계		5,296.02	5,296.02							
관장	도로	반포동 910번지 일대	4,674.71	4,674.71						신설	
	가	5개소	621.31	621.31						신설	
		가-1	반포동 910번지 일대	86.12	86.12						신설
		가-2	반포동 910번지 일대	373.02	373.02						신설
		가-3	반포동 910번지 일대	36.88	36.88						신설
		가-4	반포동 910번지 일대	63.37	63.37						신설
조경시	가-5	반포동 910번지 일대	61.92	61.92						신설	
	소계		1,347.82	1,347.82					8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계류	나	반포동 910번지 일대	229.42	229.42						신설
	다	반포동 910번지 일대	28.27	28.27						신설
	라	반포동 910번지 일대	89.89	89.89						신설
	마	반포동 910번지 일대	78.75	78.75						신설
	바	반포동 910번지 일대	366.29	366.29						신설
전디미당	사	2개소	555.20	555.20						신설
	사-1	반포동 910번지 일대	144.00	144.00						신설
	사-2	반포동 910번지 일대	411.20	411.20						신설
조형돌	①	아-2 근처 녹지							4	신설
	②	나							1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담면적연면적	공작물 증식물 (기)	
한 양 시 설	정검다리 ③	나						3	신설
	소계		1,538.39	1,538.39				27	
	아	3개소	1,000.32	1,000.32					신설
	아-1	반포동 910번지 일대	110.50	110.50					신설
	아-2	반포동 910번지 일대	565.07	565.07					신설
	아-3	반포동 910번지 일대	324.75	324.75					신설
	자	반포동 910번지 일대	538.07	538.07					신설
	파빌리온 ④	바						1	신설
	벤치 ⑤	반포동 910번지 일대						4	신설
	통나무둥기 ⑥	아-2						3	신설

구분	최 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원목평상	⑦	자							16	신설
	⑧	달개 구조물 녹지							3	신설
소계			50.87	50.87						
모래놀이터	차	반포동 910번지 일대	50.87	50.87						신설
소계			2,026.82	2,026.82			0.00	4,753.94		
전시장	카	반포동 910번지 일대	2,026.82	2,026.82			0.00	4,753.94		신설
소계			138.99	138.99						
주차장 진입로	타	반포동 910번지 일대	138.99	138.99						신설

구분	최 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증수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87
	공원등	반포동 910번지 일대							63
	CCTV	반포동 910번지 일대							24
녹지	소계		19,442.29						
	녹지	반포동 910번지 일대	19,442.29						신설
기타시설	소계		15,367.80	15,367.80					
	담개구조물	반포동 910번지 일대	874.17	874.17					신설
	담개구조물 (중복)	반포동 910번지 일대	(8,083.25)	(8,083.25)					신설
	담개점근로 (중복)	반포동 910번지 일대	(547.28)	(547.28)					신설
	한강변 기타시설	반포동 910번지 일대	14,493.63	14,493.63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 계					4,674.72				
신설	소로	3	1	4.0	247.46	990.68	연결로	남측진입	가-2	
		3	2	4.0-6.7	147.73	615.46	연결로	가-2	서측진입	
		3	3	4.0-5.5	144.06	647.20	연결로	동측진입	산책로-11	
		3	4	4.0-5.5	50.85	213.25	연결로	소로-3	가-2	
		3	5	2.4	102.47	245.92	연결로	가-3	가-4	
		3	6	2.4	51.13	122.71	연결로	가-3	가-5	
		3	7	3.0	44.29	132.87	연결로	가-3	북측진입	
		3	8	2.4	124.80	299.97	연결로	가-4	소로-7	
		3	9	2.4	29.32	70.31	연결로	소로-7	가-5	
	산책로	-	1	4.0	12.65	50.16	연결로	남측진입	서측단지	
		-	2	2.0-9.0	33.46	82.51	연결로	소로-1	가-1	
		-	3	4.0	5.54	22.16	연결로	소로-1	서측단지	
		-	4	1.5	29.03	43.63	산책로	소로-1	근린공원	
		-	5	1.5-4.0	17.15	33.47	산책로	소로-1	근린공원	
		-	6	2.0-6.0	159.83	334.35	산책로	소로-1	동측진입	
		-	7	2.0-4.0	52.85	112.99	산책로	소로-4	산책로-6	
		-	8	4.0	9.55	38.27	연결로	가-2	서측단지	
		-	9	1.1	4.31	4.72	연결로	소로-2	카	
		-	10	1.1	2.16	2.36	연결로	소로-2	카	
		-	11	1.5-9.0	96.61	207.36	산책로	소로-3	소로-2	
		-	12	4.0	5.88	23.53	연결로	소로-3	카	
		-	13	1.5	211.88	317.76	연결로	공원경계	타	
		-	14	1.5	43.54	63.08	연결로	타	공원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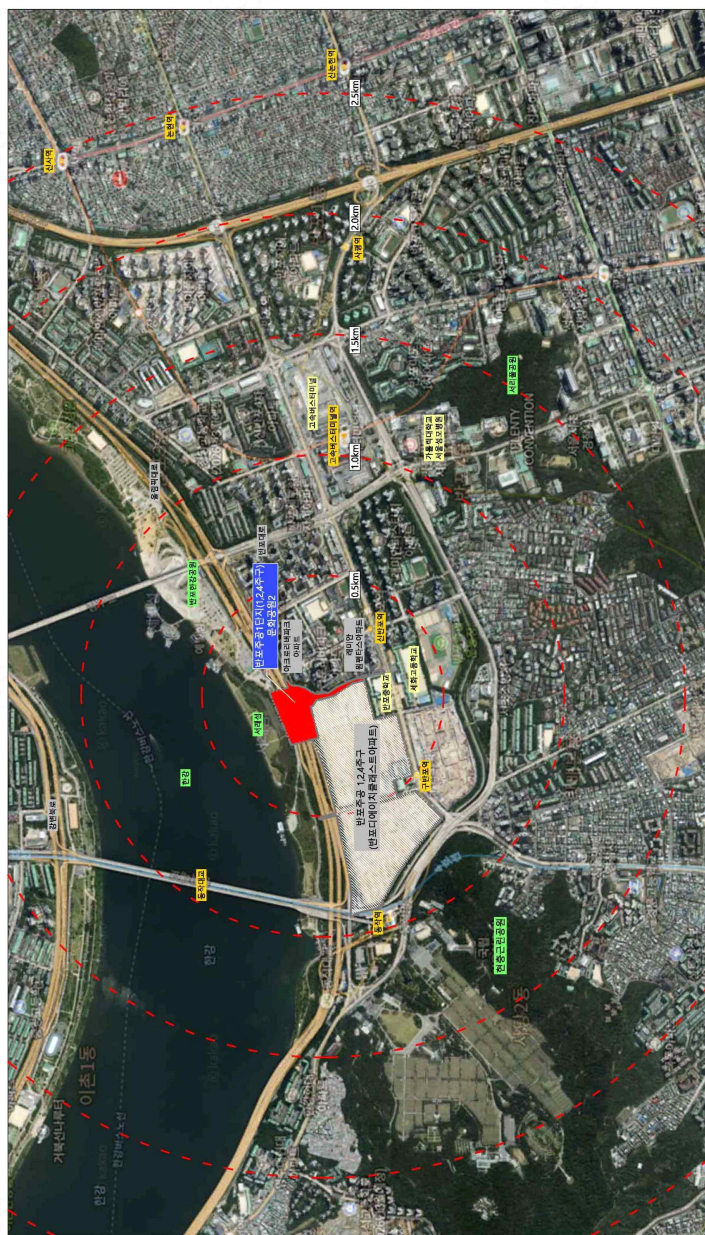
노
치
위

Scale: A1 = NONE, A3 = NONE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영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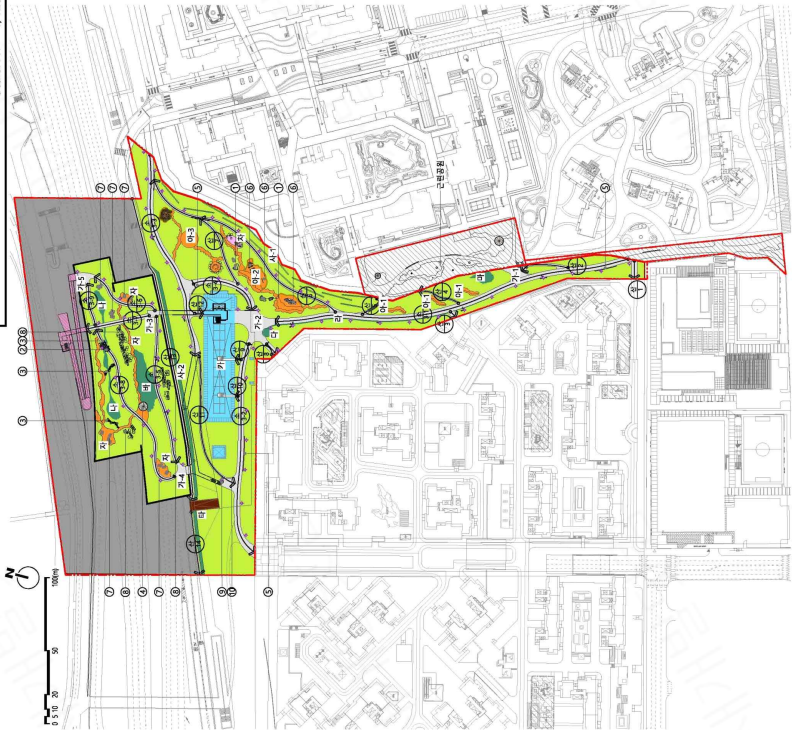
■ 사업대상지

주소: 서초구 반포동 901번지 일원
면적: 45,209.00㎡



조성계획도

Scale: A1 = 1/1200, A3 = 1/2400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 조성계획표

구분	종목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적용(㎡)	비고
기타시설	스포츠	기타시설	25,260.00	25,260.71	122	100%
		도로	5,296.02	5,296.02	122	56.99%
		가1	4,674.71	4,674.71		11.71%
		가2	691.31	691.31		
		가3	373.02	373.02		
		가4	36.86	36.86		
		가5	63.37	63.37		
		가6	1,347.82	1,347.82	8	2.58%
		가7	229.42	229.42		
		가8	28.27	28.27		
스포츠시설	스포츠	다	89.89	89.89		
		나	366.29	366.29		
		사	555.20	555.20		
		가1	144.00	144.00		
		가2	411.20	411.20	4	
		가3	1,347.82	1,347.82	8	2.58%
		가4	229.42	229.42		
		가5	28.27	28.27		
		가6	89.89	89.89		
		가7	366.29	366.29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가3	28.27	28.27		
		가4	89.89	89.89		
		가5	366.29	366.29		
		가6	555.20	555.20		
		가7	144.00	144.00		
		가8	411.20	411.20	4	
		가9	1,347.82	1,347.82	8	2.58%
		가10	229.42	229.42		
문화시설	문화	가1	1,347.82	1,347.82	8	2.58%
		가2	229.42	229.42		</

◆ 강남구공고 제2025-24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2-7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	1.5m	특수 도로	131.6m	청담동 82-7	청담동 82-7	보행자 전용도로	-	-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전용도로)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청담동 82-7 일대	길이	-	증)131.6m	131.6m	-	199.4㎡ (구분지상권 실면적)
				폭	-	증)1.5m	1.5m		
				높이	-	증)해발고도41.0~50.0m	해발고도41.0~50.0m		
				면적	-	증)199.4㎡	199.4㎡		

※ 도시계획시설 면적, 높이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 : 131.6m - 폭 : 1.5m - 높이 : 41.0~50.0m (해발고도 기준) - 수평투영면적 : 199.4㎡	보행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 상 보행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도모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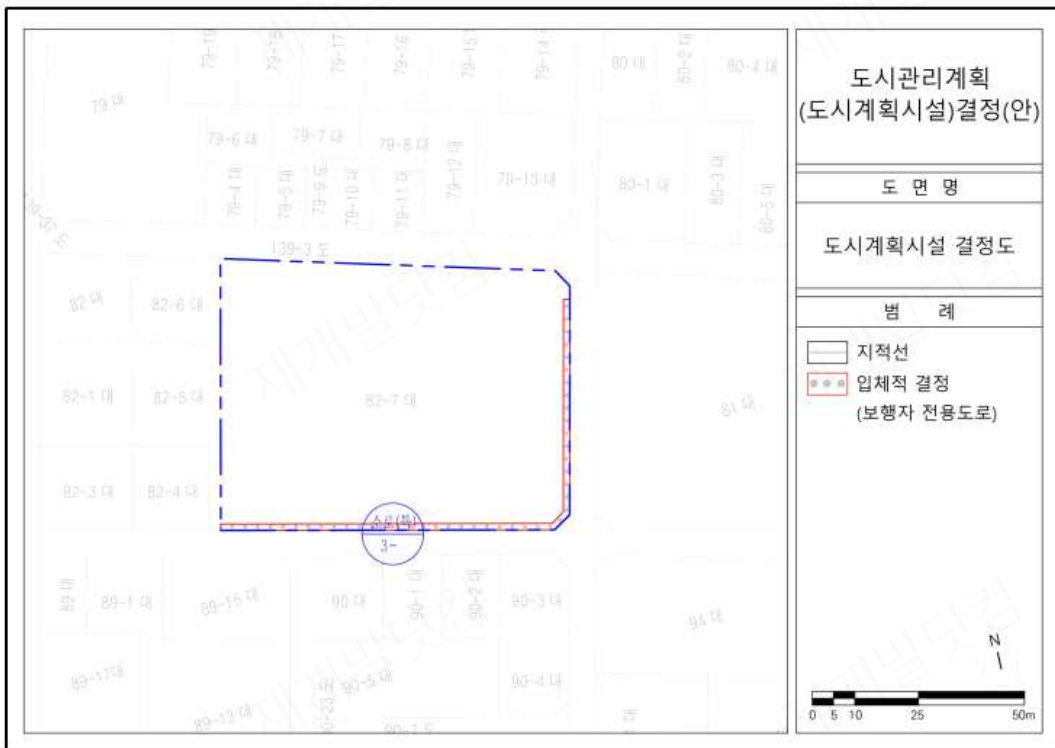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광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도면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